

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

*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개정사항은 '22.8.1일부터 적용함

1. 2022 보육사업안내

* 쪽_2022 보육사업안내(책자기준) 해당 쪽수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		
I. 어린이집의 설치															
11	3. 직장어린이집	<p>사. 이행강제금의 부과</p> <p>○ (부과주체)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중 설치의무 <u>미이행사업장에</u>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,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·군·구청장이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함</p>	<p>사. 이행강제금의 부과</p> <p>○ (부과주체)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중 설치의무 <u>미이행사업장(시·군·구청)</u>에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, 그 외 모든 설치의무 <u>미이행사업장은</u> 시·군·구청장이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용 명확화 											
12	3. 직장어린이집	<p>사. 이행강제금의 부과</p> <p>○ (부과시기) (생략)</p> <p>*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, 이로부터 1년간 부과가능</p>	<p>사. 이행강제금의 부과</p> <p>○ (부과시기) (생략)</p> <p>*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, 이로부터 1년간 <u>이행강제금</u> 부과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용 명확화 											
13	3. 직장어린이집 [정부(고용노동부)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]	<p> 정부(고용노동부)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>운영비</td> <td>인건비 지원('95)</td> <td>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사부</td> <td>월 60만원 (중소기업 월 <u>120만원</u>)</td> <td>< 최 대 지원금 액></td> </tr> </table>	운영비	인건비 지원('95)	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사부	월 60만원 (중소기업 월 <u>120만원</u>)	< 최 대 지원금 액>	<p> 정부(고용노동부)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</p> <p>*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(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>운영비</td> <td>인 건 비 지원('95)</td> <td>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원</td> <td>월 60만원(중 소기업 월 <u>138만원</u>)</td> <td>< 최 대 지 원 금 액></td> </tr> </table>	운영비	인 건 비 지원('95)	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원	월 60만원(중 소기업 월 <u>138만원</u>)	< 최 대 지 원 금 액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치 지원정책의 법령 근거 명시 지원금액 현행화, 취사부→조리원으로 용어 수정 	
운영비	인건비 지원('95)	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사부	월 60만원 (중소기업 월 <u>120만원</u>)	< 최 대 지원금 액>											
운영비	인 건 비 지원('95)	원장 보육 교사, 조 리원	월 60만원(중 소기업 월 <u>138만원</u>)	< 최 대 지 원 금 액>											
33	7.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	<p>다. 인가시 유의사항</p> <p>4)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</p> <p>○ <u>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인가 시에는 협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</u> 다만,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	<p>다. 인가시 유의사항</p> <p>4)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</p> <p>○ 2009.7.3. 이전 설치 어린이집 - (생략)</p> <p>○ <u>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인가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구 해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 명확화 및 순서 변경 										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5.1.29.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- (생략) 	<u>시에는 현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		
39	9. 어린이집의 설치기준	<p>나.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(모두 5층 이하여야 함)이 있는 경우 <u>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</u> 	<p>나.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(모두 5층 이하여야 함)이 있는 경우 <u>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('22.6.22. 시행) 반영 -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되었으나,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완화 	'22.6.22 시행
41	9. 어린이집의 설치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<u>설치</u>되어,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•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(<u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4가)②(ii)</u>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)되어,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 할 것 •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('22.6.22. 시행) 반영 -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 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되어 사회복지 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'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'하는 경우로 한정 하여 적용 -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'건물 외부로 	'22.6.22 시행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				통하는 출입구'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운영상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'건물 내부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'도 가능하도록 함	
57	11.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	<p>다.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"건물 전체"에 설치해야 함 <p>※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, 3층에 한해 허용</p>	<p>다.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"건물 전체"에 설치해야 함 <p>※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, 3층에 한해 허용되나,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~5층도 설치 가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in-height: 200px; width: 100%;"> <p>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 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, 거실,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, 4층과 5층에는 교사실,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,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,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가목4)아)②(iii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.</p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('22.6.22. 시행) 반영 - 어린이집 설치 층수가 4층·5층이라 하더라도 보육실, 공동놀이실 등 직접 보육 공간이 3층 이내로 제한되는 한편, 4층·5층에는 교사실, 휴게실, 조리실 등 보육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'간이형'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'일반형'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의 규제준수부담 완화 	'22.6.22. 시행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
II. 어린이집의 운영													
69	1.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	<p>다. 입소 및 퇴소</p> <p>○ 1순위(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4, 시행규칙 제29조 - (신설))</p>	<p>다. 입소 및 퇴소</p> <p>○ 1순위(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4, 시행규칙 제29조) - <u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</u>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(22.6.22 시행) 반영 	'22.6.22 시행								
71	1.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	<p>다. 입소 및 퇴소</p> <p>*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- (신설)</p>	<p>다. 입소 및 퇴소</p> <p>*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순위</th> <th>구분</th> <th>확인서류</th> <th>제출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순위</td> <td>북한이탈주민</td> <td>• <u>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</u></td> <td>필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순위	구분	확인서류	제출구분	1순위	북한이탈주민	• <u>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</u>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확인서류 명확화 	'22.6.22 시행
순위	구분	확인서류	제출구분										
1순위	북한이탈주민	• <u>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</u>	필수										
93	4.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	<p>가. 법적 근거</p> <p>• 영유아보육법 제38조(보육료 등의 수납)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	<p>가. 법적 근거</p> <p>• 영유아보육법 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 ①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,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,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•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9(보육료의 수납 등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탈자 수정 및 법적 근거 보완 								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p>②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4	4.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	<p>다. 필요경비 세부내역 (생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학습비: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(현장체험학습, 수련회, 견학활동)에 소요되는 입장료, 시설사용료, 교통비, 식음료비 등에 해당 <p><신설></p>	<p>다. 필요경비 세부내역 (생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학습비: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(현장체험학습, 수련회, 견학활동)에 소요되는 입장료, 시설사용료, 교통비, 식음료비 등에 해당 <p>※ 다만,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 의견 반영하여 기준 완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5	4.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	<p>라.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[표준안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항 목</th> <th>내 역</th> <th>수납 주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학 준비금</td> <td>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</td> <td>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</td> <td>연</td> </tr> <tr> <td>특별활동비</td> <td></td> <td>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현장학습비</td> <td></td> <td>현장학습비, 수련회비, 견학비</td> <td>분기</td> </tr> <tr> <td>차량운행비</td> <td></td> <td>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행사비</td> <td></td> <td>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앤솔비, 액자제작비 등</td> <td>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 목	내 역	수납 주기	입학 준비금	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	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	연	특별활동비		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	월	현장학습비		현장학습비, 수련회비, 견학비	분기	차량운행비		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	월	행사비		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앤솔비, 액자제작비 등	연	<p>라.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[표준안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항 목</th> <th>내 역</th> <th>수납 주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학 준비금</td> <td>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</td> <td>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어린이집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의 구입비용</td> <td>연</td> </tr> <tr> <td>특별활동비</td> <td></td> <td>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현장학습비</td> <td></td> <td>현장체험학습, 수련회, 견학활동 등의 소요경비</td> <td>분기</td> </tr> <tr> <td>차량운행비</td> <td></td> <td>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행사비</td> <td></td> <td>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,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</td> <td>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 목	내 역	수납 주기	입학 준비금	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	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어린이집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의 구입비용	연	특별활동비		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	월	현장학습비		현장체험학습, 수련회, 견학활동 등의 소요경비	분기	차량운행비		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	월	행사비		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,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	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용 명확화, '22년 지침 개정 시 분문에만 추가된 내용(부처님 오신 날 행사)을 표 안에 추가 	
항 목	내 역	수납 주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학 준비금	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	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	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활동비		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	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장학습비		현장학습비, 수련회비, 견학비	분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량운행비		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	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사비		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앤솔비, 액자제작비 등	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 목	내 역	수납 주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학 준비금	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	상해보험료(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既 기입자 또는 부모 요청) 어린이집 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의 구입비용	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활동비		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,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 교구의 구입에 한함)	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장학습비		현장체험학습, 수련회, 견학활동 등의 소요경비	분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량운행비		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	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사비		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통장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,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	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아침·저녁 급식비</td> <td>아침, 저녁 급식비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</td> <td>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</td> <td>시·도지 사자체 정책</td> </tr> </table>	아침·저녁 급식비	아침, 저녁 급식비	월	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	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	시·도지 사자체 정책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아침·저녁 급식비</td> <td>아침, 저녁 급식비</td> <td>월</td> </tr> <tr> <td>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</td> <td>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</td> <td>시·도지 사자체 정책</td> </tr> </table>	아침·저녁 급식비	아침, 저녁 급식비	월	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	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	시·도지 사자체 정책		
아침·저녁 급식비	아침, 저녁 급식비	월															
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	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	시·도지 사자체 정책															
아침·저녁 급식비	아침, 저녁 급식비	월															
기타 시·도 특성화 비용	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,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	시·도지 사자체 정책															
104	7. 보육교직원 보수기준	<p>다. 퇴직급여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 대표자, 대표자 겸 원장, 대표자 겸 보육 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·퇴직적립금의 적립·지원 대상이 아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,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·퇴직적립금의 적립·지원 대상임</u> 	<p>다. 퇴직급여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 대표자, 대표자 겸 원장, 대표자 겸 보육 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·퇴직적립금의 적립·지원 대상이 아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다만,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급여·퇴직적립금의 적립·지원 대상임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겸직이 불가하므로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 삭제 													

III. 보육교직원 자격

180	5. 치료사의 자격기준	<p>나.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(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언어재활사, 임상심리사 등) ○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<p><u><신설></u></p>	<p>나.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생략) <p><u>※ 치료관련 민간자격 공인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(www.pai.or.kr)에서 확인 가능, 민간자격증은 '공인'과 '등록'으로 구분되며 '공인'자격증에 한하여 인정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치료사 공인 민간자격 소지자 확인방법 안내 	
-----	--------------	--	---	---	--

IV. 보육교직원 관리

184	2. 보육교직원 임면 (채용, 해임 등)	<p>가. 보육교직원 임면권자</p> <p>2)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(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)가 임면 <p><u><신설>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(사회복지사업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겸직 제한 내용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 	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-	--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			<u>법 제21조)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직이 불가함</u>		
194	5.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	<p>다. 결격사유(구:신원조회) 및 범죄경력 조회</p> <p>1)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·군·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<u>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</u>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<p>-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</p> <p>②(결격사유</p> <p>①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확인</p> <p>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(www.share.go.kr)</p>	<p>다. 결격사유(구:신원조회) 및 범죄경력 조회</p> <p>1)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·군·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<u>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(결격사유 조회), 보육통합정보 시스템(범죄경력 조회)</u>을 이용하여 결격 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<p>-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</p> <p>②(결격사유</p> <p>① 결격사유 조회</p> <p>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(www.share.go.kr)</p> <p>범죄경력 조회</p> <p>보육통합 정보시스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범죄경력 중복조회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정리 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197	5.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	(3)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○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·군·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<u>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</u> 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	(3)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○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·군·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<u>보육통합정보시스템</u> 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	▪ 업무처리시스템 명확화	
202	7.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	2)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여되, 다.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, 탁아 시설에 근무한 경력 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(대체교사 경력 포함)* • <u>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**</u> •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• 군 복무경력(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, 최대 3년) ※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「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준용 *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: 센터장, 보육전문요원, 특수 교사, 대체교사,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, (상근)컨설턴트 **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,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	2) 호봉인정 근무경력 (생략) • (생략) • (생략) • (생략) • 2019년 6월 12일 이후 <u>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**</u> • (생략) • (생략) ※ 이하 동일	▪ 한국보육진흥원 근무경력 호봉 인정 기간 명확화 - 한국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('22.5.됨에따라, - 한국보육진흥원 근무경력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호봉인정 근무경력 적용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 ▪ (적용시점) '22.4.20부터 적용 - '22.1.1~'22.4.19까지 한국보육 진흥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획정된 경우는 '22.5.1자로 호봉 재획정 필요	'22.5.10. 근무경력 인정기준 고시 시행

IX. 보육예산지원(보육료 · 가정양육수당)

350	2. 보육료 지원 개요	바.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. 지원제외 대상 • 다른 기관을 주 보육·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	바.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. 지원제외 대상 • 다른 기관을 주 보육·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	▪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해석 필요	
-----	-----------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		<신설>	<p>예) • 정기적(주 3회 이상)으로 타 시설 기관(영어유치원 등)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• 오전 등원 후 정기적(주 3회 이상)으로 타 시설 기관(영어유치원 등)을 이용하는 아동 등</p>		
353	3. 만·0~5세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(표)	<p>[지원제외 대상(표)] • 정기적(주 3회 이상)으로 타 사설 기관(영어유치원 등)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</p>	<p>[지원제외 대상(표)] <삭제></p>	<p>▪ 다른 기관을 주 보육·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을 본문 “지원제외 대상”에 추가하였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 삭제</p>	

X. 보육예산지원(어린이집별 지원)

401	3. 장애아 보육 지원	<p>라.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) 지정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원의 20%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(기본반 기준임) <p><신설></p>	<p>(생 략)</p> <p>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%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(‘23년 2월까지 한시 적용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정원의 20%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 아동은 인근 장애 통합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발생 - 장애아어린이집 공급이 충분 하지 않은 상황에서,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정원 확대 ▪ (적용시점) ‘22.4.15~’23.2.28. 한시적용 	(적용시점) ‘22.4.15~’23.2.28. 한시적용
460	14.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	<p>나. 지원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) ② 치료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(지자체 지원 포함) <p><신설></p>	<p>(생 략)</p> <p>○ 지원 제외 대상자 -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‘22년 지침 개정시 누락된 사항 추가, ‘21년 보육사업안내 포함 내용 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
			<p><u>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(비담임교사, 보조교사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원 등) -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-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(특수 교사, 치료사 포함)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-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<p>※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</p>										
466	16.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	<p>다.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[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] <u><신설></u></p> <p><u>***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(3주~8주)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</u></p>	<p>다.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[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우선 순위</th> <th>지원사유</th> <th>지원 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긴급</td> <td>일· 가정 양립</td> <td>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</td> <td>1일 최대3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u>***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 교사 지원 가능</u></p>	구분	우선 순위	지원사유	지원 일수	긴급	일· 가정 양립	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	1일 최대3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정 휴가인 '가족돌봄휴가' 시 대체교사 지원 필요 <p>*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22조의2 (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)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 시, 대체교사 지원 필요 	
구분	우선 순위	지원사유	지원 일수										
긴급	일· 가정 양립	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	1일 최대3일										
X I. 육아종합지원센터													
484	1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	<p>마. 설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 (법 제7조) <u><신설></u> 	<p>마. 설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 (법 제7조) -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(시행령 제16조의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번역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	'22.6.22.시행							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								
486	1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	<p>사. 직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(시행령 제14조) ※ 부득이할 경우 시·군·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 (겸직) 가능. 이 경우,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<p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근(겸직)인 시·군·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 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	<p>사. 직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(시행령 제14조) ※ 부득이할 경우 시·군·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 (겸직) 가능. 이 경우,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(시행령 제16조의2)</u> - 비상근(겸직)인 시·군·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 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	'22.6.22.시행								
486	1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	<p>사. 직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,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 -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</u> - 시·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	<p>사. 직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,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 -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규정(정원)에 따름</u> <u>※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 및 직급을 편성할 수 있음</u> - 시·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-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, 정원 및 직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름을 명시 	'22.6.22.시행								
487	1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	<p>사.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자격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센터장</td> <td>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<신 설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자격요건	센터장	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<신 설>	<p>사.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자격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센터장</td> <td>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(시행령 제16조의2)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자격요건	센터장	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(시행령 제16조의2)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	'22.6.22.시행
구 분	자격요건												
센터장	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<신 설>												
구 분	자격요건												
센터장	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<u>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(시행령 제16조의2)</u>											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492	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	<p>다. 업무위탁(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, 시행령 제26조의2, 시행규칙 제39조의3) 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(중략) ○ 직원 임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-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보고 	<p>다. 업무위탁(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, 시행령 제26조의2, 시행규칙 제39조의3) 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(중략) ○ 직원 임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센터장은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-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 및 직원보고 관련 내용 삭제 	'22.6.22.시행
495	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	<p>아. 센터운영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	<p>아. 센터운영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,(삭제)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승인 내용 삭제 	'22.6.22.시행
496	3.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	<p>나. 지원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(중략) ○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)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'가급' 기준을 준용 	<p>나. 지원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(중략) ○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)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'가급' 기준을 준용 (삭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2267 일부개정 '22622 시행) [제16조의2 신설] 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한국보육진흥원장이 겸임하고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 등은 진흥원 내규를 따르는 바, 해당내용을 삭제함 	'22.6.22.시행

2. 2022 보육사업안내(부록)

* 쪽_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(책자기준) 해당 쪽수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46	2 2022년도 재무·회계 규칙 시행세칙(항목별 설명 자료)	1. 보육료(01관) 가. 작용범위 (생략) • 부모부담보육료(112목) -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 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(※ 정부미지원 어린 이집만 해당)	1. 보육료(01관) 가. 작용범위 (생략) • 부모부담보육료(112목) -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 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(※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만 해당)	▪ '22년 지침 개정사항 반영	
47	2 2022년도 재무·회계 규칙 시행세칙(항목별 설명 자료)	2. 수익자부담 수입(02관) 나. 기타 필요경비(221목) (생략) • 입학준비금: 상해보험료, 피복류 구입비(체육복, 가방, 수첩, 명찰 등), 상해보험료, 전자출결 태그 비용	2. 수익자부담 수입(02관) 나. 기타 필요경비(221목) (생략) • 입학준비금: 상해보험료, 피복류 구입비(체육복, 가방, 수첩, 명찰 등), 전자출결 태그 비용	▪ 오탈자 수정(중복 제외)	
53	2 2022년도 재무·회계 규칙 시행세칙(항목별 설명 자료)	1. 인건비(100관) 나. 일반사항 ○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 므로 급여(사회보험료 포함)를 지급할 수 없음(다만,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는 경우 지급 가능) <u><신설></u>		▪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겸직 제한 내용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	
59	2 2022년도 재무·회계 규칙 시행세칙(항목별 설명 자료)	4. 수익자 부담경비(400관) 가. 특별활동비 지출(411목) 2) 일반사항 •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	(좌동)	▪ 본문 내용 참조 안내문구 추가 하여 내용 명확화	

쪽	제목	현행	개정	개정사유	비고
		<p>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 되는 인건비 및 교재·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<p><신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 외에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'II. 어린이집의 운영 4.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' 참조 		
60	2 2022년도 재무·회계 규칙 시행세칙(항목별 설명 자료)	<p>4. 수의자 부담경비(400판) 나. 기타 필요경비 지출(421목) 2) 일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학준비금,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(체육복, 가방, 수첩, 명찰구입비 등) 현장학습비: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, 시설사용료, 교통비, 식음료비 등 <u>기타 비용: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</u> 차량운행비: 기사 인건비, 유류비, 수리비,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가능. 다만,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(120항)에서 기사 인건비를, 차량비 (215목)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<p><신설></p>	<p>(좌동)</p> <p>(삭제)</p> <p>(좌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지출 내용은 본문에 상세 기재되어 있으므로, 삭제 및 본문 내용 참조 안내 문구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 	